

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한명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286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11. .
발 의 자 : 한명훈 의원 등 11명

1. 제정이유

- 유·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·발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“전통문화”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형·무형 예술 및 생활양식으로 정함 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.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 행사,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, 법인,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~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췌서 등 : 붙임2

5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6. 예산수반사항(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) : 붙임3

7. 부서의견 : 불임4 (의견없음)

8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입법예고 : 2019. 11. 13. ~ 2019. 11. 18.(5일간)

【붙임 1】

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 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형·무형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한다)은 전통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의 보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)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
2.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3.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
4.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전통문화 육성) 시장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전통문화행사 개최
2.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
3.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
4.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예산지원)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해서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의원	한명훈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6)